

기발급 하자보수보증의 유효 성립 관련

특정감사 실시 계획

2017. 8



I. 감사실시 개요

1 감사 목적

- ☐ 기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가 약관상 보증서의 성립요건인 보증서 발급 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용검사를 필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, 보증서의 유효성 확인 및 관련 제도개선 사항 도출

2 감사 중점사항

구분	감사중점사항
보증채무의 성립	▪ 기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약관상 유효 성립 여부 점검 ▪ 기 대위변제한 하자보수보증의 적정성 점검
제도개선	▪ 약관 및 보증채무이행규정 관련 제도개선 사항 도출

3 감사인원 및 기간

- ☐ (감사인원) 박종훈 팀장, 안준무 감사역

감사인	업무분장	감사방법
○○○ 반 장	▪ 특정감사 업무 총괄	서면 또는 실지감사
○○○ 감사역	▪ 하자보수보증서의 약관상 유효 성립 여부 점검 ▪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	

- ☐ (감사기간)

- 본 감사 실시 : 2017. 9. 4. ~ 9. 6. (3영업일)
- 예비조사 실시 : 2017. 8. 28. ~ 9. 1.
- 감사준비회의 및 사전 교육 실시 : 2017. 9. 1.
- 감사 결과 보고 기한 : 2017. 10. 5.

4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

□ (감사범위) 2005. 12. 9. ~ 2017. 7. 31. 간 발급한 하자보수보증

* '02년 하자보증서 효력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포함

□ (대상부서) 보증이행처, 채권관리실, 전 영업부서

II. 주요 예상 문제점

1 예비조사 개요

□ (예비조사 기간) 2017. 8. 28. ~ 9. 1.

□ (대상 부서) 보증이행처, 채권관리실, 전 영업부서

□ (조사 방법) 전산데이터 추출, 업무담당자 면담 및 서면을 통한 자료
작성 요청

2 예비조사 주요 예상 문제점

□ 약관상 보증서의 성립이 유효하지 않을 우려

○ (내 용) 하자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
사용검사를 득하여야 유효하게 성립되나, 사용검사가 지연되어 보증서의
성립이 유효하지 않을 우려

○ (접근방법) 하자보수보증별 발급내역 및 사업장 (임시)사용검사일
확인, 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 면담

Ⅲ.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

- ☐ (감사결과 보고)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상근감사 위원에게 보고
 - 사규 위반사항 등 발견 시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 제17조에 의거 조치
- ☐ (감사결과 통보·점검) 감사결과 지적·개선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고, 매분기 이행실적 점검
- ☐ (감사결과 공유·공시) 감사결과를 사내전산망에 등록(GW-알림나라-자료실-감사자료실)하여 전직원에게 공유하고,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,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